

정책참고자료

2018-7호

설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4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2 국민권익위원회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9
3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11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선정,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원 투입 -	
4 교육부	
20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14
- 올해 210개교, 건축·소방 등 외부 전문가가 다함께 방문하여 점검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21
- 재난·치안 발생 시 사람의 한계 보완할 드론 플랫폼 개발 -	
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27
- 3. 27.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도입, 망설이지 마세요!	30
- 농식품부, 스마트팜 보급 컨설팅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전개 -	
8	환경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34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의료기관이 손잡고 아토피·비염·천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 캠프 운영 -	
9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6,734명	38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가입 높아 - -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4월 1일 시행 -	
1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높이고, 대응체계 강화	43
11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47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12	해양수산부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51
	- 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	

1

행정안전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외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구 분	처벌 내용
독 일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 국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
일 본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약 30만원) 벌금
호 주	300달러(약 26만원) 이하 벌금

-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붙임2 참고)
-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참고)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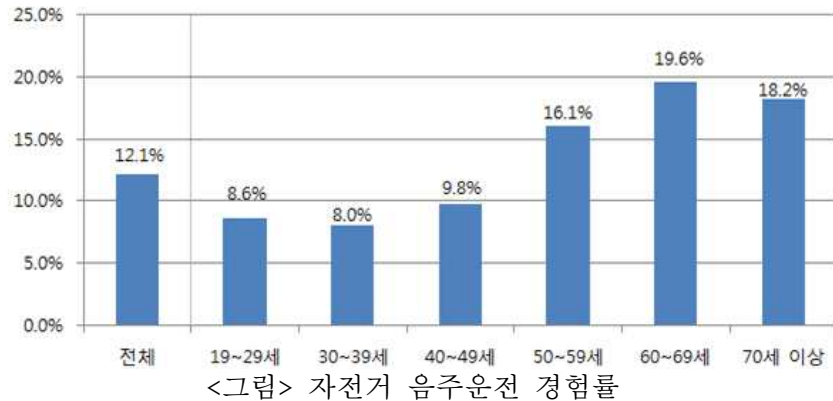
-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1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 출처 :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이중호 교수 연구팀



붙임2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부위

※ 출처 : '17.5월, 보건복지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 (단위 : 명, %)

연령	손상발생부위*									
	머리	목	가슴	복부 아래	어깨,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손	둔부, 대퇴	무릎· 아래다 리	발목·발
전체	17,245 38.4%	1,381 3.1%	2,438 5.4%	2,738 6.1%	4,014 8.9%	4,082 9.1%	3,492 7.8%	1,848 4.1%	5,721 12.7%	1,928 4.3%
9세이하	2,334 50.0%	42 0.9%	100 2.2%	228 4.9%	283 6.1%	499 10.7%	255 5.5%	108 2.3%	519 11.1%	299 6.4%
10~19세	4,144 36.1%	223 1.9%	254 2.2%	554 4.8%	873 7.6%	1,403 12.2%	1,122 9.8%	419 3.6%	1,816 15.8%	678 5.9%
20~59세	7,521 36.9%	776 3.8%	1,220 6.0%	1,207 5.9%	2,241 11.0%	1,747 8.6%	1,725 8.4%	742 3.6%	2,462 12.1%	768 3.8%
60세 이상	3,245 39.0%	340 4.1%	863 10.4%	749 9.0%	616 7.4%	433 5.2%	391 4.7%	578 6.9%	924 11.1%	183 2.2%

* 내원 환자 손상코드를 분석한 결과로, 한 명의 환자에게 복수의 손상발생부위 발생 가능

참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L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동시설
대안마련 위한 협업 T/F팀 꾸려 입주자 의견 수렴 시작 -

-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이용자가 적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 공동으로 어린이놀이기구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업 T/F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주자들 의견을 접수받는다. 2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운영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대단위 임대주택 순회방문 상담)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영구

임대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6일까지 각 지역별 1,0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함은 물론,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선정,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원 투입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4개 특화센터 신규 설치에 6억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신청대상 : 소공인 집적지의 시·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 신청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 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
 -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 *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 구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지원
 - * 특화센터 설치·운영 : 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강조

[붙임]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운영 개요

참고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 개요

□ 지정 개요

- (대상)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시·도지사가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읍·면·동	50인 이상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읍·면·동	40인 이상
군의 읍·면	20인 이상

- (지정혜택) 공동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센터설치 등 우대

* 시·도당 50억원 한도(국비 2/3범위내 지원, 지방비 1/3 대응출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안) >

구분	내용	우대 방안	관련예산('18년)
금융	소공인 특화자금	·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로 융자 (시설·운전)	· 우대금리, 한도상향 등 4,500억원
기반 조성	소공인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분야별 맞춤지원	· 집적지구 지정지역의 센터 설치 지원 112억원
	공동인프라 구축	· 분야별 필요한 공동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촉진	· 공동시설 설치 소요재원의 최대 2/3 내 매칭지원 72억원
판로 R&D	소공인 판로개척	· 판매행사 등 마케팅 비용 80%, 3천만원 한도 지원	·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80억원
	소공인 기술개발	· 기술개발 비용 80%, 5천만원 한도 지원	51억원

□ 지정절차(소공인법 및 동법시행령 근거)

- (신청) 시·도지사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장관에게 요청
 - * 집적지역 소공인 및 유관기관 현황, 기반시설현황, 연차별(3년간) 활성화계획 등
- (검토)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의견조회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검토 (법 제15조)
- (지정) 집적지구의 명칭·범위, 지정목적, 활성화계획 등을 고시

참고 2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요

□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설치요건) 관련 전문가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

- (기관)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환경)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있는 지역

* '14년 전국사업체조사기준, 소공인집적지는 업종별로 전국 696개 산재

□ 지원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기 본	■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 ■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운영·관리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 지원
교 육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	■ 경영애로(세무, 회계 등)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자 율	■ 문화·예술인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선 ■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생산으로 완제품 생산 촉진 ■ 지역·업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운영·관리 ■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 센터 현황('17년 32개) * 10개 시·도, 13개 업종

- (지역별) 서울9, 경기8, 대전3, 부산3, 전북2, 대구2, 광주2 등
- (업종별) 기계·금속7, 의류봉제6, 인쇄5, 귀금속3, 식료품3 등

□ (주요 성과) '17년 지원 소공인 업체 성과조사* 결과, 월평균 매출액 6.1% 증가, 상시근로자 수 6.5% 증가

* 조사전문업체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서 1,063개사 대상 조사 결과 기준

4

교육부

20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올해 210개교, 건축소방 등 외부 전문가가 다함께 방문하여 점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총 2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참조

□ 원스톱(one-stop) 점검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구성 분야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교통안전 등

□ '15년부터 추진한 원스톱(one-stop) 점검은,

- 개별적인 점검의 비효율을 없애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17년 원스톱 점검 설문조사 중 '학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 : 97.8%

-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우선 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18년 원스톱(one-stop) 점검은 '17년에 제작한 '분야별 학교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2] 참조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탑재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17년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①점검학교 수를 확대하고 ②점검기

간을 학기 내로 조정하였으며, ③전문점검팀(중앙점검반+지역점검반)을 권역당 2팀씩 배치*하여 점검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 6개 권역별(중앙,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제주권, 호남권)로 전문점검팀을 구성(분야별 1~2명)하여 권역당 2팀씩 배치

- 점검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국안전환경기술원,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도로교통공단 등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 관리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주요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취약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 안팎의 안전 요소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한 번에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처방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대상 학교
2.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붙임 1 '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대상 학교

□ 개 요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8년, 5억 원)

※ ('15년) 68개교 → ('16년) 180개교 → ('17년) 200개교 → ('18년) 210개교

□ '18년 시도별 점검대상 학교

- 중앙점검반 : 10개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제주	소계
학교수	2	1	1	1	2	1	2	10

※ '16년에 중앙점검반에서 점검한 학교를 재방문하여 사후관리

- 지역점검반 : 200개교(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선정)

권역	1(수도권)				2(중부권)					
시·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학교수	15	11	18	12	11	4	11	12		
소계	56				38					
권역	3(경남권)			4(경북·제주권)			5(호남권)			총계
시·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광주	전북	전남	
학교수	12	10	14	11	14	10	11	12	12	
소계	36			35			35			

※ (교육부) 전체 학교 수 대비 시·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시·도별 학교 수를 결정

※ (시·도교육청) 안전사고 다발학교, 희망학교 중 학교급,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

붙임 2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결과 총 4,837건의 미흡사항 지적

< 분야별 미흡사례 건수(단위 : 건) >

시설분야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교통안전	총 계
건 축	소 방	전 기	가 스				
451	1,371	539	277	618	973	608	4,837

- 분야별 가이드라인(예)

※ '15년부터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방법을 제시

❖ [소방] 소화기 관리대장의 서식 및 활용

- ▶ 소화기 관리대장(권장서식 참조)에 학교 내 전 구간에 비치된 소화기마다의 정보(위치, 관리번호, 실용도, 종류, 제조일)를 기입.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① 법 제20조제6항 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방화, 전기·가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참고 소화기 관리대장 권장서식

[별지10]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									
① 종 류 · 종 류 · 종 류	② 자 제 관 리 번호	③ 소 화 기 종 류	④ 규 격 · 제 조 번호	정 비 사 항					
				일 자	정 비 업 제	정 비자	정 비한 내 용	소 화 기 검 정 번호	정 비 업 제 화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계획서
권장서식

소화기 관리대장					
건물	관리번호	실용도	종 류	제 조 연/월	비 고
본관-교실1	교실	■문열 □기타	2017	06	
-교실2	교실	■문열 □기타	2017	06	

※ 학교안전원스톱점검
권장서식

▶ 권장서식의 특징

- 학교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간소화 하였다.
- 내용연수(10년)에 따른 교체 시에도 대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실용도에 따른 소화기의 적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축] 난간시설의 높이

- ▶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기준 높이 이상 설치
 - 내부계단 난간높이 : 85cm 이상(건축법 적용)
 - 옥상, 2층 이상, 옥상노대 : 120cm 이상
- ▶ 최상층 내부 난간대 높이를 천장까지 설치하거나 H=1.8m이상 높이로 설치하기를 권장

※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층에 있는 노대의 난간높이, 외부 : 120cm 이상



최상층 난간대 시설 미비



최상층 난간대 보완

❖ [환경] 총부유세균

- ▶ 벽면 누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누수 보수 수리
- ▶ 젖은 걸레, 젖은 우산의 교실 내 보관으로 인한 습도 미관리
 - 높은 습도는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절별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확인 필요
- ▶ 총부유세균의 경우 수업시간에 측정하고 측정지점 중 최고농도 기준 적용하므로 관심과 조치 필요

※ (관련근거) 학교 교사(校舍) 내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2017.3.1. 개정) '제5절 5-4. 총부유세균'



교실 안에 젖은 상태로 걸려있는 우산



별도의 우산 꽃이 마련



교실 내에서 건조 중인 걸레



외부 별도의 건조대 마련

❖ [가스] 가스배관 바닥 설치

- ▶ 가스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통행자에 의하여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 ▶ 통행자에 의하여 배관에 충격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보호덮개의 충격이 내부가스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부 가스배관과 보호덮개의 간격을 유지토록 관리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KGS FU431. 2.5.7.8.1 (실내바닥배관)



가스배관 노출 설치



가스배관 충격방지덮개 설치

❖ [실험실습실] 화학약품 밀폐 보관

- ▶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
- ▶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
- ▶ 화학물질은 시약장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약품용기의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또는 유해증기가 실험실습실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나 부식성물질은 내식성이 있는 밀폐형환기시약장에 보관
 - 생체조직에 접촉되었을 때 소량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다량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도 구조적인 부식 발생

※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 실험실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KOSHA GUIDE G-82-2012.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



서랍장 보관으로 유해증기 확산



밀폐형 환기 시약장에 보관

❖ [전기] 스위치·콘센트 관리

- ▶ 주방, 준비실, 화분 옆 등 물을 취급하는 주변의 이동용 콘센트는 물이 콘센트 내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의 수평으로 사용하지 말고 벽 쪽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 ▶ 노후한 스위치·콘센트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교실 내 파손된 콘센트나 스위치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안전 원칙)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플러그 파복 손상



플러그 교체

❖ [교통] 학교 내 보행로 구분

- ▶ 보행로는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용지의 제약으로 인해 보행로와 차도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노면표시 등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보/차 구분이 없어 상충위험



학교내 보행로 구분과 시선유도효과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 재난·치안 발생 시 사람의 한계 보완할 드론 플랫폼 개발 -

- 화재, 해양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치안용 드론’이 본격 개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3월 30일(금)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 2020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치안현장에서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플랫폼을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 이를 통해 소방, 경찰, 해경의 서 단위(전국 소방서 215개, 경찰서 254개, 해경 합정 230척)까지 재난·치안용 드론 보급을 통해 ‘21년부터 2,800여대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오늘날 재난 및 사건 발생 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관측·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정보 수집에만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나 산·바다 등 광범위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재난·치안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크다.

* 골든타임(5분) 이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 (서울 등 7개 광역시) 75.5%, 4분 19초, (경기 등 9개 광역단체) 48%, 7분 20초

- 또한, 육상과 달리 해상 재난은 해류·조류의 영향으로 조난선박 등이 부유해 이동하므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경이 현재 보유한 함정규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중대형급(1천~5천톤급) 38척, 중형급(250~500톤급) 41척

- 이와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이 기존 산업과 유기적으로 접목되어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난·치안현장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솔루션으로 드론이 부상*하고 있다.

* 재난·치안분야의 드론활용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56% 성장, 드론활용일수는 '15년 대당 40일에서 '25년 대당 90일까지 증가 전망(EuroConsult, '16)

- 본 사업에는 총 29개의 드론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업·학교·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재난·치안현장용 드론 임무장비,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체계 등 현장대응을 위한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개발한다.
- 본 사업으로 개발된 드론이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하게 될 임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실내 탐색) 터널, 대형물류창고 등 안전상황 및 붕괴위험으로 소방대원의 2차 인명손실까지 예상되는 실내 지역에 드론이 투입되어,
 -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비행하면서 건물 내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지상통제장비 및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 실내 탐색 드론 플랫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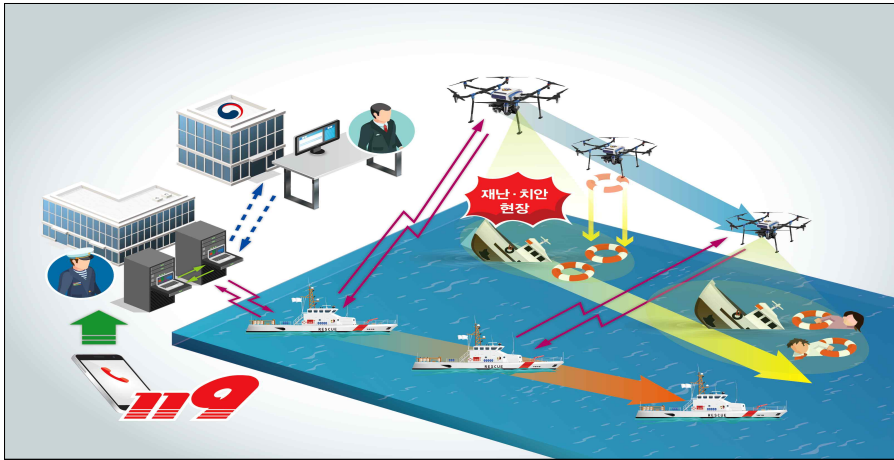


- (실외 재난 대응) 화재, 사건사고 등 사고발생 신고 접수 직후 대원출동보다 빠르게 드론을 출동시켜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현장상황 영상을 출동대원들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 화재사고의 경우, 총 2기의 드론이 출동하며 1기는 대형소방차 출동 지원을 위해 소방차량이 사고현장까지 가는 경로의 교통상황을 촬영하고 다른 1기는 화재현장의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면서 필요시 소방장비 투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 실외 재난 대응 드론 플랫폼 >



- (해양 탐색·구조) 불법조업, 선박사고 등 빠른 해양경비정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탐조등과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여,
- 불법조업의 경우 드론이 선박을 탐지하고 수동조종으로 선박에 근접하여 선명(船名), 조업형태, 허가 번호판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 선박사고의 경우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환을 투하하거나 연안의 유류유출 해역을 촬영해 중앙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한 방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 동 사업은 국내 우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상업용 드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고, 재난·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국방·안보 분야 등 타 분야로 파생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방, 경찰, 해경이 필요로 하는 드론 사양*을 구체화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공인시험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비행·임무장비, 시스템 운용성을 시험 평가한다.

* 최대이륙중량, 임무하중, 배터리용량, 프로펠러 직경, 모터출력, 비행·체공시간, 상승속도 등

○ 휴인스 등 14개 기업·기관은 현장의 재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드론 기체, 기본임무장비(카메라, 짐벌 등) 및 지상통제장비와 내열성·내부식성 등 재난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용한다.

○ 솔탑 등 4개 기업은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 실내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실내의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경찰, 해경 담당자들이 쉽게 운용토록 드론 운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드론의 운용성을 높인다.

○ 에이엔에이치 등 10개 기업은 재난환경에서 임무수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특화임무장비*를 중점 개발한다.

* 함상 착륙장치, 소방장비 및 투하장치, 유해물질/방사능 측정, 스피커, 구명환 투하장치 등

□ 관계기관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 경찰, 해경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임무성능을 반영한 상세설계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 올해 하반기부터 '20년까지 재난현장용 드론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을 개발하고, 성능평가, 재난현장 시범운용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갈 예정이다.

○ 이후, 본격 양산을 통해 소방, 경찰, 해경 각 서 단위까지 드론을 배치하여 운용하면서 국내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조달청과 협력하여 동 사업으로 개발된 드론이 소방, 경찰, 해경 등 공공수요로 연계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 국산 기술 및 핵심제품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3. 27.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화) 오후 3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7년 9월 22일 자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 대해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담당자와 현장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실시(‘17년 8월~’18년 3월)하고,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검토해왔다.

앞으로 수립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문체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이번 토론회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발제와 토론은 향후 5년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문화교류 기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과정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국제문화교류 현장전문가와 업무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앞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 국가 간 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안)

붙임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안)

□ 목 적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2017. 9. 22.)에 따라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 토론회 개요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일시) '18. 3. 27.(화) 15:00~17:00
-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
- (참석대상) 국제교류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학계, 현장전문가 등
- (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설명 및 토론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개회	사회자
15:00~15:10 (10분)	○ 인사말 겸 토론회 취지 설명	국제문화과장
15:10~15:40 (30분)	○ (발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및 논의사항 설명 * 국제문화교류 진흥 중기 비전 및 목표, 정책범위 및 수행체계, 세부 정책과제 제안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박사
15:40~15:50 (10분)	휴식	
15:50~16:40 (50분)	○ (토론) - 최준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좌장] - 정정숙 대표이사(전주문화재단) - 김세준 교수(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 주재연 감독(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한경아 대표이사(쇼앤아츠)	토론자별 10분 이내
16:40~17:00 (20분)	○ 질의응답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도입, 망설이지 마세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보급 컨설팅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전개 -

《 주 요 내 용 》

◇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

- 스마트팜 컨설팅 대상자 확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지원품목 확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스마트팜 신규 진입농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현장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

- 스마트팜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One-Point 문제해결식 사후관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먼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컨설팅을 신청 시 농가상황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컨설팅 신청 장소 및 시기

: 사업장(농지) 소재 지자체(시·군·구), '18. 4. 2일부터 연중 접수

○ 또한,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수관비·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지침 개정사항>

2017	2018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 ₂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제어장비 :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 ₂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에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순환팬, 온습도조절기 등), 기타(무인방제기 등)

○ 또한, 시설원에 재배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장설명회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활성화 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부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단계별 추진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마트팜 도입 농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컨설팅, 스마트팜 운영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도 동시에 추진된다.

○ 먼저, 스마트팜 신규 도입농을 중심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다시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품질 향상, 영농 편의성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 A/S 등 도입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현장애로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해결식 사후관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로써, '농가현황 분석 → 농가요구사항 분석 → 스마트팜 기술·장비 안내 → 장비도입·사용과 데이터 활용 지원 →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등 소주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빠른 시간 내에 운영 안정화에 도달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스마트팜이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

환경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의료기관이 손잡고 아토피·비염·천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 캠프 운영 -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아토피·알레르기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 관찰 숲길 걷기와 같은 친환경 체험과 함께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사무소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지역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함께 하며,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5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A형)은 국립공원 내 사찰과 연계(템플스테이)하면서 전문병원의 진료·상담과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주 등에서 총 54회 운영할 예정이다.
- ※ 국립공원 10개소(경주, 계룡산 등), 의료기관 10개소(서울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 센터, 충남대병원 등), 사찰 5개소(불국사, 갑사 등) 참여
- 두 번째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B형)은 국립공원에서 숲체험·동식물 관찰을 하면서 환경보건센터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법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태안 등에서 21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6개소(계룡산, 북한산 등), 환경보건센터 8개소(단국대, 고대안암병원 등) 참여

- 세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C형)은 환경성질환 센터에서 아토피 예방 목욕법, 친환경 소품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30회 운영한다.

※ 국립공원 7개소(무등산동부, 치악산 등), 환경성질환센터 6개소(진안, 제주 등) 참여

- 참가 신청은 4월 2일부터 캠프에 참여하는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 또한 참가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방학 기간에 당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운영된다.

- 기타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 해설부(033-769-9571)로 문의하면 된다.

-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이 이번 건강나누리 캠프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일정표.
2. 전문용어 설명

붙임1

2018년 건강나누리캠프 운영 일정표

-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 A형 (54회, 2,220명)

지역	국립공원	지역 의료기관	운영 방법	운영 횟수
경북 경주	경주 054-778-4162	경북아토피센터	템플스테이	2회/80명
대전시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9597	충남대병원	템플스테이	2회/80명
경남 남해 경남 사천	한려해상 055-860-5800	사천시 보건소 남해군 보건소	당일형	8회/320명
경남 통영 경남 거제	한려해상동부 055-640-2400	통영시 보건소	당일형	8회/320명
전남 장성	내장산백암 061-392-7088	장성군 보건소	당일형	13회/610명
강원 태백	태백산 033-550-0000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당일형	6회/240명
강원 원주	치악산 033-732-5231	상지대 한방병원	당일형 템플스테이	5회/200명 2회/80명
서울시	북한산 02-940-3757	서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템플스테이	2회/80명
서울시	북한산도봉 031-828-8024	도봉구 보건소	당일형	4회/130명
광주시	무등산동부 061-371-5700	-	템플스테이	2회/80명
계	10개소	10개소		54회, 2,220명

-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 B형 (21회, 880명)

지역	국립공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분야	운영 횟수
울산시	경주 054-778-4162	울산대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질환)	4회/160명 (당일~1박2일)
충남 천안	계룡산 042-825-9597	단국대병원	소아발달장애	1회/40명 (당일)
충남 태안	태안해안 041-672-9738	태안군보건의료원	유류유출오염	8회/320명 (당일)
서울시	북한산 02-940-3757	고대안암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질환)	4회/120명 (당일)
인천시	북한산도봉 031-828-8024	인하대병원	알레르기질환 (알레르기비염)	1회/50명 (1박2일)
제주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피부염)	1회/70명 (1박2일)
서울시		고대안암병원(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피부염)	1회/80명 (당일)
전남 화순	무등산동부 061-371-5700	화순전남대병원	소아발달장애 (소아암)	1회/40명 (당일)
계	6개소	8개소	-	21회, 880명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 C형 (30회, 900명 대상)

지역	국립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횟수
전북 진안	덕유산 063-322-3174	진안 에코에듀센터	7회 (1박2일~2박3일)
경기 수원	북한산 02-940-3757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5회 (1박2일)
전남 보성	무등산동부 061-371-5700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6회 (1박2일~2박3일)
강원 동해	치악산 033-732-1445 태백산 033-550-0000	동해 무릉건강 숲	5회 (1박2일~2박3일)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9597	충남권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5회 (2박3일)
제주도	북한산도봉 031-828-8024	제주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2회 (2박3일)
계	7개소	6개소	30회, 900명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해 대학교,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4개 센터가 운영 중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운영 중
 - 전국 8개 지자체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설치 중이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건강상담, 친환경 체험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 진행

9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6,734명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가입 높아 -
-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4월 1일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 (개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 지원)을 보태어, 2년 만기 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참고] 금번 보도자료는 '16.7월 시범사업 개시하여 '17년부터 본격 운영 중인 2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청년일자리대책(3.15)에 포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 통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

-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16년 7월부터 '18년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 연도별로는, '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17년에는 18,268개 기업에서 40,170명의 청년이, '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에서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단위 : 명, 개소)

사업연도	가입 청년 수	가입 기업 수
'16년 (시범, 7~12월)	5,217명	2,788개소
'17년 (1~12월)	40,170명	18,268개소
'18년 (1~3월)	21,347명	10,514개소
총 계(누적)	66,734명	26,020개소

* 단, 기업 누계는 연도별 일부 중복 있음

□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가입기업 규모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5인 미만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개소 (비율)	26,020 (100)	2,055 (7.9)	6,332 (24.3)	9,972 (38.3)	5,712 (22.0)	1,949 (7.5)

○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기업 업종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소 (비율)	26,020 (100)	11,092 (42.6)	1,705 (6.6)	3,955 (15.2)	3,196 (12.3)	3,344 (12.9)	2,728 (10.5)

□ 한편,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가입청년 연령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인원 (비율)	66,734 (100%)	3,149 (4.7%)	18,643 (27.9%)	32,447 (48.6%)	10,819 (16.2%)	1,676 (2.5%)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으며,

<가입청년 학력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인원 (비율)	66,734(100)	16,874(25.3)	11,066(16.6)	38,794(58.1)

○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이 회사가 2년 동안 근무할 만한 곳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취직하자마자 청년공제 가입 결정을 해야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으로, ①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 ②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위 ①, ② 사항은 3.15.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 또한, ③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였다.

* ③은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 마지막으로,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재편하였다.

* 종전에는 직장경험 있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경험이 없다면 이직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 발견

- 구체적으로, ④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였다.

* 재직 중인 청년의 경우에는 추경 통과 후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를 통해 지원 예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중 전	개 선 (4.1.시행)
가입기한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가입최소기한	가입 후 1개월 이내	가입 후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청년가입요건	▲ 생애최초 취업자 및 ▲ 이직자(청년공제 가입이력 無)	▲ 고보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취업자 및 ▲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4.1.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 6천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 5천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인턴 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18.3월)

○ 또한,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1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현행 2년형, '16.7월~)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17년 참여경로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본격 실시
- '18년은 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목표: ('16) 1만명 → ('17) 신규 5.5만명(추경 0.5만 포함) → ('18) 신규 5만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알선 등) 사전 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18년부터는 참여경로 폐지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방식]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③ (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3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다문화가족 지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높이고, 대응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3월 22일(목)부터 23일(금)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전화센터로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방문·내방·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 제공, 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긴급 상황에 대한 상담 및 피난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최근 이주여성 미투 현상 등 폭력상황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인권감수성 훈련에 구체적인 폭력피해 지원과 사례 등을 보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4월중에는 다누리콜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지원 시설 종사자(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등)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상담 및 지원건수는 128,779건으로 전년도(124,401건)에 비해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년간 언어별 상담실적은 베트남 4만 8천여 건(38%), 중국 2만 1천여 건(16%), 캄보디아 1만2천여 건(9%) 이었으며, 그 외 필리핀,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 상담내용은 생활정보 제공 41%, 이혼문제 및 법률지원 16%, 체류·국적·취업·노동 15%, 폭력피해 및 쉼터안내 14%등이다.
-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과 접점에 있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 “특히,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 감시 등을 위해 국제결혼이민관을 올해 상반기 중 파견하고, 가정 폭력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업무 및 이용방법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실적

붙임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업무 및 이용방법

□ 업무 안내

-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긴급·위기지원 상담, 생활정보 제공, 갈등해결 상담 및 통역, 3자 통화를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 상담
-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시설 운영 (아동 동반 가능) 및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활동과 서울과 지역 6개센터에서도 전화 및 면접, 방문 상담이 가능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365일 24시간 언제나 ☎ 1577-1366을 누르면 가능
 -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 팔어, 영어, 한국어
 - * 고객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전화번호(1577-5432)도 착신을 유지
- 온라인상담 :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언어→상담→1:1상담 코너)
 - * 한국어는 다누리콜센터 → 1:1상담 코너 이용
- 긴급피난처 이용 및 면접상담 : 가까운 센터에서도 가능

< 다누리콜센터(지역)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77-1366
서울	1577-1366
수원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6-1366
부산	051-508-1366
경북구미	054-457-1366
전북전주	063-237-1366

붙임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실적

□ 유형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

	총계	전화		면접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양자	3자					
계	128,779	117,800	3,023	3,595	1,588	1,125	1,240	408
비율	100	91.5	2.3	2.8	1.2	0.9	1.0	0.3

□ 이용자 현황

(단위 : 건, %)

	총계	본인		배우자		시부모	친인척 기타	관련기관					기타
		여	남	아내	남편			센터	다문화 관련	경찰	법원	기타	
계	128,779	59,599	6,930	340	20,440	946	2,461	3,471	979	8,584	5,216	10,589	9,224
비율	100	46.3	5.4	0.3	15.9	0.7	1.9	2.7	0.8	6.7	4.1	8.2	7.2

□ 이용자 출신국 현황

(단위 : 건, %)

	총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크	태국	라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계	128,779	48,244	20,937	3,716	11,986	11,558	7,846	5,385	5,855	375	458	2,749	4,491	5,179
비율	100	37.5	16.3	2.9	9.3	9.0	6.1	4.2	4.5	0.3	0.4	2.1	3.5	4.0

□ 상담내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 건, %)

	총계	폭력피해	부부가족 갈등상담	이혼문제 법률지원	체류국적 취업노동	법원	생활정보	국제결혼 피해상담	기타
계	152,255	15,032	20,963	24,179	22,575	5,716	62,588	465	737
비율	100	9.9	13.8	15.9	14.8	3.7	41.1	0.3	0.5

11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인상률	연 5% 이내			

-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 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②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③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 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 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 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미래 신(新)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되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법령을 정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레저선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회 조합원 자격까지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18년 규제개혁 추진 목표

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해양수산 규제 재설계로
※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대표 추진 과제(24개)

**① 미래신산업 분야
(7개)**

- ①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 제정
- ② 마리나선박 등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 ③ 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 ④ 항만신기술 시범사업 근거 마련
- 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⑥ 미래신산업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 ⑦ 신산업관련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② 일자리 창출 분야
(6개)**

-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요건 완화
- ② 마리나정비업 신설
- ③ 수중레저선박(선외기) 시설기준 현실화
- ④ 어항 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 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확대
- ⑥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③ 민생안정 분야
(11개)**

- ①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 ②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 ③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 ④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절차 간소화
- ⑤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구체화
- ⑥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 방법 확대
- ⑦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검사 개선
- ⑧ 어선원부의 등본, 초본 발급 방법 개선
- ⑨ 원양어업자의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의무 완화
- ⑩ 저울관세율할당 수산물 수입권 공매 참가 서류 간소화
- ⑪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규제현안 대응, 성과 홍보, 체계적인 제도 운영, 적극 추진 분위기 조성